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 전북하이텍고등학교 가정통신문

전북하이텍 제2021-72호  
발송일 : 2021. 10. 8.  
발송처 : 전북하이텍고등학교  
전화 : 063-291-4911

## 제 목

2021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부모 예방교육 실시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반가운 소식만 가득하길 바라며,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소원합니다.

본교는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대면(가정통신문)으로 진행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더 많은 교육자료 제공을 희망하시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http://school.jbedu.kr/jbhitec>) -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 0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의 변천 과정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규정이 교원지위법에 제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현행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법률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309호, 2019. 10. 17. 시행)

-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강화함.
-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 보호조치의 근거를 강화함.

#### 대통령령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9호, 2019. 10. 17. 시행)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01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입니다. 실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부분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법은 침해행위자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주로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자, 즉,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로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객체

#### 교육활동 중인 교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교원의 신분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이뤄진 교원에 대한 위법행위에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01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조치 규정 신설

법률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근거를 교원지위법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아닌 교원지위법에 의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근거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일 2019.10.17.)이전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일 2019.10.17.)이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교원지위법」제17조
가능한 조치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⑤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 <sup>⑥</sup> 에는 적용 안 됨)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

2021. 10. 7.

전북하이텍고등학교장

